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7. 23.
교육사회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7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7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7. 15 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수정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개편과 행정환경 변화,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및 본청의 기획기능 강화에 따라 국장업무를 조정 분장하고,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의 체험중심 영어교육 활동과 연수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국제화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하며, 충주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 공간을 조성·제공하기 위하여 「충주학생회관」을 설립하는 한편,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국장 분장 사무에 아래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 학부모 정보제공 및 상담·고충처리 지원
 - 방과후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 학교 교육 정책의 개발 조정 및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 교원단체 관련 업무
- 기획관리국장 분장 사무에 아래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에 관한 사항
 -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 비상사태와 재난대비 및 위기관리 업무
- 충주학생회관을 신설함(안 별표 3)
 - 충주학생도서관을 폐지함(안 별표 2)
 - 학생회관 기능에 도서관 기능을 추가함(안 제34조제1항)
-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영어체험센터"를 둠(안 제32조)
 - 영어체험센터를 신설함(안 제37조제1항)
 - 영어체험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안제37조제2항)
 - 영어체험센터의 위치 및 명칭을 별표 6과 같이 신설함
(안 제37조제3항)
- 기타
 - 별표 4의 옥천학생야영장의 위치를 "1016"번지에서 "1015"번지로 정정함

Ⅲ.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정책의 변화와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및 본청의 기획기능 강화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 영어체험센터와 충주학생회관 설립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본청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의 분장사무 추가(안 제6조,제7조)

- 교육국장은 학부모 정보제공 및 상담·고충처리 지원 외 4개 업무, 기획관리국장은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외 3개 업무를 추가로 분장

나. 충주학생회관 신설에 따른 규정정비(안 별표3, 제34조제1항)

- 기존 충주학생도서관은 1972년도에 신축하여 35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건물로 연면적 661㎡(2층)로 도시규모의 확장(개발)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 교육·문화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며, 아울러 관아공원과 인접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의 충주학생도서관을 폐지하고(안 별표2) 도서관,공연장,전시실, 체험학습실 등을 갖춘 충주학생회관을 설립함으로써 그 간 학생 문화·여가공간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충주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문화 향유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어체험센터 신설에 따른 규정정비(안 제32조, 제37조)

- 영어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의 영어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및 국제문화 이해 능력을 증진하고 공교육력 향상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충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32조에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영어체험센터"를 두고, 안 제37조에 영어체험센터를 신설하여 북부영어체험센터와 남부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라. 옥천야영장 지번 변경(안 별표4)

- 옥천학생야영장의 위치를 지번 합병으로 1016번지에서 1015번지로 정정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본청 국장업무 추가분장과 체험중심 영어 교육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및 국제화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북부영어체험센터」, 옥천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남부영어체험센터」의 설립과,
- 충주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 공간을 조성·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1일자로 충주교육청 소속기관인 「충주학생도서관」을 폐지하고 「충주학생회관」을 설립하는 한편,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34조제1항은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로서, 자연스러운 문맥구성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를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주요내용

- 안 제34조제1항 중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를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으로 수정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9. 7. 15.

제안자 : 정윤숙 의원 외

수정이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제1항(학생회관)에서 자연스러운 문맥구성을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1. 안 제34조제1항(학생회관) 중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를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로 수정함.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4조제1항(학생회관) 중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를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4조(학생회관) ①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u>육성하기</u>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p>	<p>제34조(학생회관)①----- ----- ----- -----<u>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u> ----- -----.</p>	<p>제34조(학생회관)①----- ----- ----- -----<u>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u> ----- -----.</p>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학부모 정보제공 및 상담·고충처리 지원
- 16. 방과후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 17. 학교 교육정책의 개발 조정 및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 18.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 19. 교원 단체 관련 업무

제7조제15호 중 “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 및 직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직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19.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에 관한 사항
- 20.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 21. 비상사태와 재난대비 및 위기관리 업무

제32조 중 “교직원복지회관”을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육성하기”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로 한다.

제4장에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영어체험센터) ①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의 체험중심 영어교육 활동과 연수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국제화를 선도하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한다.

- ② 영어체험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영어체험센터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충주학생도서관에 대한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충주학생회관에 대한 부분 및 별표 6의 신설규정 중 북부영어체험센터에 대한 부분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별표 2】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3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교 육 청
중원도서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30-3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청원도서관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81-3	충청북도청원교육청
보은도서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25-4	충청북도보은교육청
옥천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9-1	충청북도옥천교육청
영동도서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3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진천도서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49-2	충청북도진천교육청
괴산도서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59-12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증평도서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764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음성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	충청북도음성교육청
금왕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3-3	충청북도음성교육청
단양도서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1	충청북도단양교육청

【별표 3】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제3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교육청
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26-1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70	충청북도제천교육청

【별표 4】

학생야영장의 명칭과 위치(제35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교육청
중원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172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제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산18-36	충청북도제천교육청
옥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015	충청북도옥천교육청
영동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643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청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201-1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

【별표 6】

영어체험센터의 명칭과 위치(제3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교육청
북부영어체험센터	충북 충주시 호암동 526-1	충청북도충주교육청
남부영어체험센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2-11	충청북도옥천교육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4. (생략)</p> <p><u><신 설></u></p>	<p>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4. (현행과 같음)</p> <p><u>15. 학부모 정보제공 및 상담 · 고충처리 지원</u></p> <p><u>16. 방과후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u></p> <p><u>17. 학교 교육정책의 개발 조정 및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u></p> <p><u>18.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u></p> <p><u>19. 교원 단체 관련 업무</u></p>
<p>제7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4. (생략)</p> <p><u>15. 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 및 직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u></p> <p>16. ~ 17. (생략)</p> <p><u><신 설></u></p>	<p>제7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4. (현행과 같음)</p> <p><u>15. 직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u></p> <p>16. ~ 17. (현행과 같음)</p> <p><u>18.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u></p> <p><u>19.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에 관한 사항</u></p> <p><u>20.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u></p> <p><u>21. 비상사태와 재난대비 및 위기 관리 업무</u></p>
<p>제32조(설치)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야영장, <u>교직원복지회관</u>을 둔다.</p>	<p>제32조(설치) -----</p> <p>-----</p> <p>----- <u>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u>를 -----.</p>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학생회관) ①청소년들의 교양 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u>육성하기</u>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p>	<p>제34조(학생회관) ①----- ----- ----- ----- ----- <u>육성하며,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u> -----.</p>
<p><신 설></p>	<p>제37조(영어체험센터) ①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의 체험중심 영어교육 활동과 연수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국제화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한다. ② 영어체험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영어체험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6과 같다.</p>

관계법령 발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타법개정]

제7조 (실·국등 기구의 설치) ①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본청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기구외의 실·국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 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